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61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허종식·어기구·윤관석

최혜영 · 김교흥 · 김민석

김성주 • 이성만 • 배진교

최종윤 · 신동근 · 강병원

김정호 · 유동수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5세 전까지의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지급이연기되는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그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 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중 "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"를 "경우에는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)	제62조(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)
① 제61조에 따른 노렁연금의	①
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	
미만인 사람(특수직종근로자는	
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)	
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	
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	<u>경우에는</u>
5세(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) 전	
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	
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	
연기할 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